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검 토 보 고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 미수범 처벌 완화 등〉

■ 정부 제출안(의안번호 제220223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 미수범 처벌 완화 등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5.
3. 회 부 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 미수범 처벌 완화 등

개정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의 예비·음모죄의 범정형을 하향조정하고, 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7조).

현행	개정안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 ¹⁾ 까지----- ----- ----- -----. ② 제473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제361조²⁾제5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존자원³⁾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

1) 「제주도법」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제주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희귀 동물·식물 및 부존자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제1항 및 제2항)

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3조제1항⁴⁾에서는 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죄(이하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라 함)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77조는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⁵⁾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존자원 지정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고시)>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일원
	제2호	퇴적암	
	제3호	응회암	
	제4호	자연석	
	제5호	패사	
	제6호	검은모래	
기타	제7호	지하수	

4) 「제주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본죄에 준한다”의 의미는 「형법」에 따른 감경·면제를 배제한다는 의미임.(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86)
 ※ “본죄에 준한다”는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음(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보존자원 반출 단속 실적 ('20~'23)>

연도 (건수)	적발장소	보존자원 종류	사건 경과 (2024.10 현재)
2020 (3건)	제주항2,4,6부두	자연석 23점	제주지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3건)
2021 (1건)	무혐의 사건종결(증거불충분)		
2022 (1건)	제주항 4부두	석부작 11점, 자연석 3점	제주지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2023 (n건)	제주항 4부두	화산송이 2점	제주지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1대 국회 당시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설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의 1차 개선과제⁶⁾(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⁷⁾.

이에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하지 못한 법률을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의 취지에 따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① 예비·음모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됨⁸⁾. ② 미수죄는 「형법」 제25

6)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안 마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2022. 8. 26.)

7) 의안번호 21195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⁹⁾, 제26조에 따른 중지미수에 대한 필요적 감경¹⁰⁾ 및 제27조에 따른 불능미수에 대한 임의적 감경¹¹⁾을 적용받게 되어 종전 본죄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한 법정형에 비해 처벌이 완화됨¹²⁾.

또한, ③ 교사·방조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¹³⁾을 삭제함으로써, 교사죄 중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는 「형법」에 따라 예비·음모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하여 처벌이 완화되고¹⁴⁾ 방조죄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감경¹⁵⁾을 적용받게 하여 종전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한 법정형에 비해 처벌이 완화됨.

9)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10)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 예비·음모와 마찬가지로 미수범 또한 해당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13)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은 교사범·방조범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의 가중 등을 위해 「형법」의 감경조항을 배제하려는 의미임(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84)

14)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5)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예비·음모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경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경불가)
교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경가능)
방조죄		
미수죄		

이와 같이 개정안은 제주도만이 보유한 생태적·환경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무허가 매매·반출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행위(미수)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유지하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고 미수에 대한 감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73조제1항의 타당성에 대해 추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보존자원으로 고시된 자연석¹⁶⁾ 등을 무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출목적·반출량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일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하고 특별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제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법정형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⁷⁾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¹⁸⁾

1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자연석”을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으로 정의하고 있음.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⑦ (생략)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생략)

을 국외로 반출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형벌로서 그 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거나, 매매·반출 행위의 목적·양태·규모 등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¹⁹⁾.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의2. (생략)
6.~14.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8)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개정안은 예비·음모죄의 범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²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²¹⁾은 지정문화유산, 기념물 등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것을 예비·음모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출 예비·음모죄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개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반출의 예비·음모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지 않음.

셋째, 개정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완화됨에도

2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제97조(미수범 등) ② 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 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종전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형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²⁾, 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 확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부적절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은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으므로²³⁾, 구법과 신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형법총칙과 형사정책상의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7

22)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2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95

참 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개선 과제(총 32건)

연번	법률명 (부처)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형벌 폐지: 총 2건>				
1	물류시설법 (국토부)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	형벌규정 삭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정지로 제재)
2	식품위생법 (식약처)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
<과태료 전환: 총 11건>				
3	공정거래법 (공정위)	제126조 제1호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4	공정거래법 (공정위)	제126조 제2호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5	공정거래법 (공정위)	제126조 제3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6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제41조 제1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7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제41조 제2호	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 부정한 등기의 경우 현행유지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8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제41조 제4호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9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부)	제51조 제15호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0	광산피해방지법 (산업부)	제47조 제3호	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

연번	법률명 (부처)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11	벤처투자법 (중기부)	제78조 제2항 제1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3천만원 이하)로 전환
12	가맹사업법 (공정위)	제41조 제3항 제2호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지 ②등록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행위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3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제81조 제26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先행정제재-後형벌전환: 총 5건>				
14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15	하도급법 (공정위)	제30조 제1항 제1호, 제7조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6	하도급법 (공정위)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연번	법률명 (부처)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17	하도급법 (공정위)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先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8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기정통부)	제17조 제2항 제4호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현행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미보고 및 비치불이행죄), 先 행정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後 형사처벌(시정명령불이행죄 신설)토록 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벌 형량조정: 총 14건>				
19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기정통부)	제17조 제1항 제5호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가 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20	불공정무역조사법 (산업부)	제40조의2 , 제40조 제1항 제1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 하여 책임주의 관철
21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6조	반입·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2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4항 제1호 관련)	입주기업 외의 자가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3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4항 제2호 관련)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연번	법률명 (부처)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24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4항 제3호 관련)	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5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호	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6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1호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7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제2호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8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제62조 제2항, 제59조	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9	제주특별법 (행안부· 국토부)	제477조, 제473조 제1항	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예비·음모범을 기수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음모범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30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제57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유지하고,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여 책임주의 관철
31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제3조 제1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32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망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유지하고, 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